

문서번호	조경과-5478	시 민			
결재일자	2019. 4. 12.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공원관리팀장		

I·SEOUL·U

2019년 수경시설 운영계획



2019. 4.

푸른도시국
(조경과)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해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 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 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와가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양커시설, 가버년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 속 가 능 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9년 수경시설 관리계획

도심 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는 분수, 벽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시설 현황

● 수경시설 : 총 458개소 (공원 321개소, 가로변·녹지대 등 137개소)

●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바닥분수	분수	물놀이장	벽천·폭포	계류	연못	기타
합계	458	184	72	18	66	68	43	7
접촉형	164	134	-	18	-	9	-	3
비접촉형	294	50	72	-	66	59	43	4

▶ 기타는 세죽장, 물놀이장 등

2 운영 계획

● 가동기간 : 2019. 5. 1. ~ 9. 30. (5개월간)

※ 단 4월, 10월은 미세먼지 및 기온에 따라 수경시설 관리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하여 가동

● 가동시간 : 2 ~ 6회/일 (회당 30분)

- 입지별 특성, 이용 인원, 에너지 상황, 일기 및 가동시기(주말)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효과가 적은 시간대 가동 지양, 전력 피크시간대(14시 ~ 17시) 가동 중지
- ▶ 이용 인원, 행사 개최, 관광 진흥, 에너지 상황, 일기 및 가동시기(주말, 여름철), 이용행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3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수질관리기준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인

● 관리방향

- 물놀이형 신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변경신고 확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 중 수질관리(검사) 철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 수질검사

- 관리대상 : 자치구 물놀이형(접촉형) 164개소(시 조경과 관리시설)
- 검사항목 및 기준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5.8~8.6	4NTU이하	200개체수/100mL 미만	0.4~4.0mg/L (염소소독시)

- 검사기간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 매월 10일까지 검사결과 공문으로 제출

- 의뢰기관

- ▶ 市 관리 시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 ▶ 자치구 관리시설 : 해당 자치구 보건소 등

- 검사방법

- ▶ 시설 관리기관에서 수질 검사기관에 공문으로 수질검사 의뢰
- ▶ pH, 유리잔류염소는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현장 측정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 방안

- ▶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 **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구 분	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세균학적 검사(미생물항목)	이화학적 검사
시료용기	무균채수용기 ※ 잔류염소가 함유된 수질시료 검사시에는 반드시 멸균된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	
시 료 량	대 장 균	200ml 이상 × 1개
	레지오넬라균	1l 이상 × 1개
채수방법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채수용기에 물을 채취한다. 이때 절대로 용기를 행구어서는 안되며, 시료용기에서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채수한다. 또한 뚜껑의 안쪽이나 시료 용기의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수된 시료는 얼음 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신속하게 실험실로 운반한다. (4℃ 저온상태로 운반)	

●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비접촉형 수경시설의 관리 공통 사항)**

- 점검 대상
 - ▶ 시설설비 : 제어반, 펌프(수중, 살균, 배수 등), 저류조, 정수시설 등
 - ▶ 편의시설 : 바닥포장, 주변 편의시설 등
- 운영기간 중 주기적인 시설 및 안전점검

관리분야	관리기준	비 고
수심 30cm이하 유지 부유물· 침전물 점검, 제거	수시	
설비 등 안전점검	월1회	
저류조 청소 / 여과기 통과	주1회/일1회 이상	

- ▶ 저수조 청소와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 ▶ 70cm 이상의 깊은 물이 있는 수경시설은 접근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익사 등 안전사고 방지
- ▶ 강우 및 강풍시에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상시관리가 어려운 수경시설은 빗물감지시설 설치

- 적은 비에도 가동중지 되도록 빗물감지장치 센서의 작동기준 조정
 - 시간당 2mm이상 강우시 또는 강우 확률 60% 이상 예고시
 - 5m/sec 이상 강풍시

▶ 기계, 전기 등 각종 분수설비의 수시 점검으로 감전 등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일지에 각종 기기 점검 및 정비사항 기록

● **편의시설 설치**

- 그늘막 등 편의시설과 수경시설 등의 안내표지 설치 및 점검

4 추진 일정

- 청소, 시험가동, 누전점검, 안내판 정비 : '19. 4. 30.까지
- 수경시설 가동 및 수질관리 : '19. 5. ~
- 피크 가동시 환경부와 시 합동 점검 : '19. 7. ~ 9.
- 수경시설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인터넷 개시 : '19. 9. ~

5 행정 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춰 세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문 제출(매월 10일까지)**
- 신고서 및 관리카드 제출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붙임 1)
 - ▶ 신규 수경시설 설치·운영 시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변경신고**(붙임 3)
 - ▶ 운영기간 및 소독방법 변경 시, 물놀이형 시설에서 제외시 (접촉형→비접촉형) 등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붙임 4)

- 수질 기준을 초과 시(초과확인 날부터 5일 이내),
- '19년 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2020년 1월 30일까지)



● 위반시 벌칙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조치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붙임 1~4. 관련서식(신고서, 신고증, 변경신고서, 관리카드 등) 각 1부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1부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1부(별첨)
 7. '19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1부
 8. 수질검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